

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요트마리나
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3 월 10 일

여 수 시 장 권 2 정



여수시 조례 제1725호

붙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 중 “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개항질서법」”을 “「해사안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요트시설의 운영관리)”를 “(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)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관리 · 운영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·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의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“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· 운영계획”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.

1. 국내 마리나항만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
2. 국내외 마리나항만의 실태와 전망
3.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
4.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5.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
6.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해양오염 방지계획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 ·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4조제1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성과평가 등)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19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」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)”를 “(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)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「여수시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「항만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개항질서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	7. ----- 「해사안전법」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<u>요트시설의 운영관리</u>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<u>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 관리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제12조의2(<u>관리 · 운영계획의 수립 등</u>) 시장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·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의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

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
“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
관리 · 운영계획” 을 5년마다
수립할 수 있다.

1. 국내 마리나항만의 환경변화
에 관한 사항
2. 국내외 마리나항만의 실태와 전망
3.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
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
4.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
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5.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
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
조치에 관한 사항
6.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
해양오염 방지계획 및 환경개
선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여수시 요트마리나
시설의 효율적 관리 · 운영과
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
정되는 사항

제14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「공
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의 규정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
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, 단체
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
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14조(위탁운영) ① ----- 「공유
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위탁의 취소) ① (생략)

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9조(청문)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 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) ① ~ ③ (생략)

제30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여수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위탁의 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-----
---.

제18조의2(성과평가 등)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19조(청문) -----
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-----
---.

제28조(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준용) -----
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-----
---.